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연구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



유 혜 숙 (대구가톨릭대학교)
(yhsanna0622@cu.ac.kr)

국문 요약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거듭되었고, 2020년에도 차별금지법안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논쟁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논쟁을 크게 세 가지 입장, 곧 여성계와 진보 단체, 가톨릭,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과제를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전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지지 체계 구축, 지혜로운 입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주제어 :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동성애

I. 서론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발표하였고, 2007년 7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추진기획단이 최종안을 법무부에 이관하였다. 2007년 12월 법무부의 첫 번째 발의 이후 제17대 노회찬 의원, 제18대 박은수 의원과 권영길 의원, 제19대 김재연 의원,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반대 여론에 따른 자진 철회로 거듭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자체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2020년 7월 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하였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이준일 2014, 250-256; 이지현 2014, 107-109; 홍성수 2018, 3-5; 한지영 2011, 93-95; 홍성수 2019, 11-14; 서울신문 2020/12/10; 한국일보 2020/12/11).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거듭되었고, 2020년에도 다시 한번 논란이 뜨거웠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논쟁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여성계와 진보 단체, 가톨릭,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 세 가지 입장을 고찰하며,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II. 차별금지법안 관련 쟁점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크게 특정 차별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거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고(이재희 2013, 103-154; 이준일 2014, 249-256; 김명수 2014, 165-203),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영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단일차별시정기구를 만들고,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이념목표로서의 평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기본법으로 제안되기도 한다(홍성수 2018, 2).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할 이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한국 사회에도 이미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2006년

비정규직차별금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이에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과 모든 차별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여성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개별 사유가 아닌 중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 미흡한 구제책 등 차별금지법안으로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모든 사유를 포괄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지영은 차별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차별금지관련법은 특정 영역 및 사유별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다룰 수 없으므로, 이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한지영 2011, 90, 119). 홍관표는 “차별금지에 대한 개별법적 규율에 따른 입법적 공백 및 적용상의 혼란을 정리하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유로 어떤 유형의 차별로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실효적 구제수단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차별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홍관표 2013, 326-327)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 평등 등 인간의 기본권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하는 차원이므로 헌법의 정신을 더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 모두의 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이면서 더 나아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세계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홍관표 2013, 327-328; 홍성수 2018, 6-7).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에서는 기존 법률, 곧 헌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존에 마련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사유에 몇 가지를 포함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3가지를 포함한다(제11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19가지를 포함한다(제2조 3항). 2007년 법무부 정부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13가지, 2008년 노회찬 의원 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22가지, 2011년 박은수

의원 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미포함 대분류로는 7가지, 2011년 권영길 의원 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22가지, 2012년 김재연 의원 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23가지, 2013년 김한길 의원 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포함 22가지, 2013년 최원식 의원 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12가지 사유를 포함한다.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를 포함한다(제3조 1항).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22가지를 포함한다.¹⁾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여부이다(홍관표 2013, 328-330; 홍성수 2018, 15-18; 서울신문 2020/12/10; 한국일보 2020/12/11).

셋째, ‘차별금지 개념과 유형, 영역에 무엇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차별금지 개념과 유형에 공적 차별뿐만 아니라 사적 차별,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복합 차별, 괴롭힘, 성적 괴롭힘, 비방, 혐오, 차별 지시, 차별 광고, 혐오 표현, 차별의 표시·암시, 불이익조치(보복) 등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결정해야 하고, 차별의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고용, 거래, 교육 영역 등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므로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 무엇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포함되는데,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적용하듯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종교의 자유, 세계관의 자유,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사항을 예외로 하기도 한다(한지영 2011, 104-111; 홍관표 2013, 330-335; 이재희 2013, 130-131, 135-136; 이준일 2014, 250-256; 김명수 2014, 175; 홍성수 2018, 18-32). 이재희는 사적 차별에 대한 평등권 보장의 정당성 근거로 헌법적 근거와 현실적 근거를 제시한다. 헌법에 평등권 조항이 있고, 평등권 조항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등 여러 정당한 근거들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1)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안에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적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세력이 점점 더 영향을 미치는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한다면 공적 영역의 평등권 보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현행법으로는 사적 차원의 평등권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그 해결 가능성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한다(이재희 2013, 105-148).

넷째, ‘차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그 모든 차별을 어떻게 정당한 기준에 의해 처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자 차별의 경우 수적 차이를 판단하는 통계 정확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적 차이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 정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한지영 2011, 104-111; 홍관표 2013, 330-332), 평등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형량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이재희 2013, 129-135, 148; 김명수 2014, 166).

다섯째, ‘차별구제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홍관표는 개별법적 구제조치가 차별 피해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어떤 개별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구제조치도 상이하므로, 이런 입법적 공백 및 혼란을 해결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홍관표 2013, 325-327, 335-338). 한지영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사안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나 형사처벌 규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한지영 2011, 90, 111-118). 홍성수는 차별시정기구를 단일화하여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홍성수 2018, 8-10). 안진은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안진 2017, 232). 2007년 법무부 정부안에서는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008년 노회찬 의원 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2011년 박은수 의원 안에서는 임시조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2011년 권영길 의원 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복행위의 형사처벌, 2012년 김재연 의원 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복행위의 형사처벌, 2013년 김한길 의원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2013년 최원식 의원 안에서는 손해배상과 보복행위의 형사처벌, 2020년 장혜영 의원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포함한다(이준일 2014, 251-252; 홍성수 2019, 8-11).

Ⅲ.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세 가지 입장

대개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구분되고, 성별 정체성은 시스젠더(Cisgender)와 트랜스젠더(Transgender)로 구분된다. 이성애와 시스젠더가 다수를 차지하고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동성애자(Lesbian과 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중성애자 또는 간성애자(Intersex),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진 자(Questioning) 등은 모두 성 소수자로 일컬어진다.²⁾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많은 경우 ‘동성애’로 대변되는 성 소수자 관련 문제, 곧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김종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담론을 크게 정부 문서와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 관련 담론이 성적 지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성 소수자와 동성애’ 또는 ‘동성애와 교회’ 관련한 것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권 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성적 지향이 타협 불가능한 가치의 영역, 진리 수호의 문제로 확산하였다고 진단하고,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반공주의와 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한국의 정치적 보수주의라는 이념적 토대가 자리한다고 진단한다(김종우 2018, 617-631). 그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크게 법학·사회과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의 두 분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관점에서 다시 입법 찬성, 입법 반대, 절충의 세 가지 입장을 구분하는데(김종우 2018, 618-620), 본고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기에, 이를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개진하고자 한다.³⁾ 첫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성계와 진보 단체의 입장이다.⁴⁾ 둘째,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는

2) 성 소수자는 퀴어(Queer), 엘지비티(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엘지비티큐(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stioning), 엘지비티큐플러스(LGBTQ+), 엘지비티에이아이큐플러스(LGBTAIQ+)로 불린다. 이는 동성애자(Lesbian과 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곧, MTF(male to female: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와 FTM(female to male: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무성애자(Asexual), 중성애자 또는 간성애자(Intersex),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진 자(Questioning) 등을 가리킨다.

3) 입장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저자 개인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기에 일단 이렇게 분류하면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4) 2018년 10월 16일과 2020년 11월 11일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2020년 7월 24일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44개 여성단체 주최로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송원영, 20/11/11).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에는 반대하는 가톨릭의 입장이다.⁵⁾ 셋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 입장이다.⁶⁾

1. 여성계와 진보 단체의 입장⁷⁾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계는 차별하지 않아야 할 자와 차별해도 될 자를 나누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진단하고 “평등에 예외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이서(홍문보미) 2017, 31).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10년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제시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정부는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과 시기의 적절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성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지난 10년 동안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는 오히려 더 조직화·정치화되었다고 진단한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2017, 261-264).

여성계와 진보 단체는 세계 각국도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국제 강령, 협약, 선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다. 특히, 성 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멸시와 혐오, 차별과 배제, 박해와 폭력에 시달려 왔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멸시와 혐오, 차별과 배제, 박해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 소수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뉴스1. 출처: <https://www.news1.kr/photos/view/?4474551> (검색일: 2020. 12. 29.); 황덕현. 20/07/24. 여성단체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뉴스1.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005942> (검색일: 2020. 12. 29.) 참조).

- 5) 한국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20/09/07.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01208?search=%EC%B0%A8%EB%B3%84&gb=K1200> (검색일: 2020. 12. 29.) 참조.
- 6) 2020년 12월 16일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개신교계 단체가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민경석. 20/12/16.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뉴스1. 출처: <https://www.news1.kr/photos/view/?4530596> (검색일: 2020. 12. 29.) 참조).
- 7) 이서(홍문보미) 2017, 30-31.; 이지현 2014, 107-139 참조.

권리를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신학계에서도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에 약자를 보호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근본주의 관점과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의 실상을 비판한다(최영실 2007, 62-84).

이처럼 여성계와 진보 단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논란과 반대 때문에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역설한다.

2. 가톨릭의 입장

가톨릭은 행위와 행위자, 죄와 죄인, 인식과 자유의지의 동의에 의한 행위와 인식과 자유의지의 동의가 결여 내지 배제된 행위를 구별하고,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동성애자와 지속적이고 비 선택적인 동성애자, 동성에 성향을 가진 동성애자와 동성에 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를 구별한다.

가톨릭은 죄에는 엄격하셨지만, 죄인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 악한 언행을 넘어 악한 마음마저 신랄하게 비판하여 간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탐하는 것까지 비판하시면서도 간음한 여인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태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근거하여(마태 19,18; 마르 10,19; 루카 18,20; 요한 7,53-8,11), 행위와 행위자, 죄와 죄인을 구별한다(유혜숙 2012, 30-32, 36-37).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도 않고 동성결혼 합법화에도 반대하지만, 인간 권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박해에도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 배려, 존중을 강조한다.

이런 가톨릭의 입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 56항, 250-251항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된다. 250항에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 특히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관련하여 그들을 존중하는 동반을 하여 동성에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251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역 교회가 압력을 받거나 국제기구들이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제도화하는 법률의 제정을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경제 원조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56항에서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 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한다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경계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천주교회 역시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2020년 9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을 통해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차별 금지 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는 문제”, “차별 금지 법안의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파괴,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한다.⁸⁾

이처럼 가톨릭은 소수자와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른 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3.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 입장

한국 개신교, 특히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근본주의 성향의 개신교 보수 교단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9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등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 간 성행위를 단죄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부터 2020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까지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서와 선언, 서명운동이 계속되었다.

2020년에도 전국 505개 단체 연합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10월 27일 총 27만7299명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2020

8) 한국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20/09/07.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01208?search=%EC%B0%A8%EB%B3%84&gb=K1200> (검색일: 2020. 11. 20.) 참조.

년 10월 28일 ‘동성애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에 예정합동,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 많은 개신교 보수 교단이 동참하였다. 2020년 12월 16일에는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 2020년 12월 30일에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이상민 의원 법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였고,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전라남도교회총연합회,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도 공동으로 이상민 의원 발의 예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단체들이 제시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유를 종합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소수자에게는 특혜가 되겠지만 다수 국민에게는 성적 지향 및 동성결혼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 반대할 양심, 신앙,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이 될 것이다. 둘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다면, 헌법 위배, 건강한 가정 해체, 사회 윤리 도덕 파괴,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체제 변경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의 문제, 차별의 개념에 간접 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키는 문제, 동성애에 대해 반대 또는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전도 행위도 ‘괴롭힘’이라는 법 위반행위로 간주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조차도 종교 차별로 간주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무차별적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⁹⁾

이처럼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는 성 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

9) 강원숙.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국회에 제출. 20/10/28. 크리스찬연합신문. 출처: <http://cupnews.kr/news/view.php?no=15712> (검색일: 2020. 12. 26.); 예정개혁측.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 20/12/14. 교회연합신문. 출처: http://www.ecumenicalpress.co.kr/n_news/news/view.html?no=51276 (검색일: 2020. 12. 26.); 민경석. 20/12/16.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다’. 뉴스1. 출처: <https://www.news1.kr/photos/view/?4530594> (검색일: 2020. 12. 26.); 유종환. 전북 4000여 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적극 나서 세기총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천만인서명운동본부 전기총과 MOU. 20/12/21. 기독교한국신문. 출처: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56> (검색일: 2020. 12. 26.); 임경래. 세기총-전북기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 MOU 체결. 20/12/24. 크리스찬연합신문. 출처: <http://cupnews.kr/news/view.php?no=16055> (검색일: 2020. 12. 26.); 임경래. 20/12/30. 한교총과 전국 연합회들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철회하라”. 크리스찬연합신문. 출처: <http://cupnews.kr/news/view.php?no=16103> (검색일: 2020. 12. 30.) 참조.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당한다는 문제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IV. 성찰과 과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이다. 찬반 양 진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성찰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전환¹⁰⁾

1) 원인?

성 소수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원인, 가정환경적 원인, 진화생물학적 관점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유전자와 호르몬, 초기 자궁 내 환경, 뇌의 구조 등이 거론되고, 가정환경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육아 방식과 유아 시기 경험의 영향 등이 거론되며,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이성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성애 유전자가 자녀 생산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동성애 유전자가 이성애자들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며, 모계 친척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더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 소수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논쟁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매우 이른 유아기에 형성되고, 성 소수자들 스스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선택’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며, 타인이 개입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에 대한

10) 김일수 2019, 17-320; 루이-조르주 탕 2010, 14-298; 수잔 스트라이커 2016, 19-233; 애너매리 야고스 2012, 53-115; 이준일 2009, 3-326; 플로랑스 타마뉴 2007, 121-227; 동성애. 위키백과.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C%95%A0> (검색일 2020. 11. 20.) 참조.

윤리 도덕적 평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식과 자유의지의 동의에 기반한 인간적 행위(actus humanus)라야 윤리 도덕성의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지적 요소 인식(cognitio)과 의지적 요소 자유 의지(liberum arbitrium)의 동의(consensus) 여부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완전히 면책되기 때문이다(유혜숙 2012, 30-31).

2) 질병?, 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20년 동성애를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으로 발표하였고, 미국 정신의학회도 1942년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선언하였다. 이런 흐름은 1952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1판, 1965년 제2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73년 제2판 수정판부터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생활의 한 형태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제3판까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치료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1987년 제3판을 수정 보완하면서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보는 범주마저 완전히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993년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통해 성적 지향이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규정하였고, 성적 지향이 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 지향이며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도 성적 지향성은 장애와 연관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의학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오늘날 동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 문제를 질병이나 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에이즈의 원인?

발병하면 에이즈로 진행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잠복기가 길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한다. 1981년 6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로스앤젤레스의 동성애자 남성 5명에게서 발견한 주폐포자충 폐렴을 처음 보고하였고, 1982년 6월 한 병리학 연구원이 캘리포니아 남부의 동성애자 남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 병이 성병일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게이면역결핍증 GRID)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에이즈(AIDS)는 미국 등에서 병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감염자 절반 이상이 동성애자 남성이 아닌데도 동성애자 남성들만 걸리는 병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82년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즉 에이즈(AIDS)라 공식적으로 명명된 이 병은 동성과 이성 상관없이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서 비롯된다.

오랜 기간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를 죄인, 정신질환자, 에이즈 환자 등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

2.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성 소수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호모포비아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인류 역사 안에서 그동안 이성애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와 증오와 폭력이 자행되었다. 안 좋은 선입견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혐오하며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집단 괴롭힘, 증오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고, 성 소수자, 특히 레즈비언은 피해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성범죄, 곧 교정강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비난과 혐오와 증오와 폭력의 범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관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악셀 호네프 외 2019, 15-304).

“그동안 성 소수자 단체, 여성 단체, 인권 단체 등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5년 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였지만¹¹⁾”(유혜숙 2019, 163-164), 한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은 교육의 근간인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 실과, 기술·가정, 도덕, 생활과 윤리, 학교 성교육 표준안 등 여러 교과목을 통해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¹²⁾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11) 한국 정부는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1)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국제연대위원회, 16/11/03.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참여연대.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458230> (검색일: 2019. 05. 13.) 참조).

12) 보건교사회. 초등학교 보건5. 도서출판들샘. 2018, 60-85(4 성과 건강); 보건교사회. 초등학교 보건6. 도서출판들샘. 2018, 56-73(4 성과 건강); 유인숙 외 6인. 중학교 보건. 천재교과서. 2020, 64-98(II 생활 속의 건강, 2 성 건강); 유인숙 외 5인. 고등학교 보건. 천재교과서. 2020, 68-100(II 생활 속의 건강, 2 성 건강); 이춘식 외 14인. 초등학교 실과5. 천재교과서. 2020, 16-21(첫째 마당 안녕? 새롭게 만나는 나, 2 건강한 성); 이춘식 외 12인. 중학교 기술·가정 ①. 천재교과서. 2020, 26-38(I 청소년의 이해, 0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이춘식 외 12인. 고등학교 기술·가정. 천재교과서. 2020, 8-51(I 결혼과 가족); 추병완 외 10인. 중학교 도덕①. 지학사. 2020, 124-139(II. 타인과의 관계, 03. 성 윤리); 정탁준 외 7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20, 66-77(II. 생명과 윤리, 03. 사랑과 성윤리) 참조.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성 소수자가 자리하고,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며, 그들이 겪는 차별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 소수자는 학교에서 괴롭힘, 왕따, 폭력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에, 다른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우울 경향과 자살률을 보인다. 청소년 동성애자가 경험한 폭력에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52.9%), 신체적 폭력의 위협(25%), 신체적 구타(14.4%), 성폭행(10/6%) 등 다양한 폭력 유형이 있으며,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구 수, 동성애 수용 정도, 반동성애 폭력 경험 등이 제시되었다(강병철·하경희 2006, 270-271, 276-285; 이영선 외 2012, 136-142). 사실 이런 조사 결과는 성 소수자의 차별 금지를 포괄하는 학교 성교육이 얼마나 시급하며 절실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 소수자에 대해 바로 알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¹³⁾”(유혜숙 2019, 164).

3. 지지 체계 구축

성 소수자들은 오랜 시간 죄의식과 수치심, 성 정체성의 혼란, 비밀 준수에 불안, 고독감 등 심리적 고통과 억압에 노출되고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며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특히, 청소년 성 소수자들은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에 속한다.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문화, 일상화된 동성애 혐오, 청소년 성 소수자를 향한 집단 괴롭힘 등이 자살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강병철·하경희 2005, 276-285; 이영선 외 2012, 136-142; 김성연 2013, 32-65). 따라서 가정과 사회의 지지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는 경우 자살 시도율을 낮추고,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배척하게 되면 자살 시도율을 높인다고 한다. 따라서 먼저 가족의 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정적인 편견, 사회적 배척, 정신병자 취급, 법적 차별, 제한된 사회적 지지가 성 소수자들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을 초래하므로 사회의 지지 체계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 편견, 차별이 해결될 때 성 소수자들의 삶의 질 역시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병철·하경희 2005, 276-285; 이영선 외 2012, 136-142; 김성연 2013, 32-65). 따라서 성 소수자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

13) 박수지, 17/02/08, 성소수자 배제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한겨레.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759.html (검색일: 2019. 04. 28.) 참조.

써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4. 지혜로운 차별금지법 입법

여성계가 주장하듯 인간 가운데 차별 가능한 사람과 차별 불가능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존엄하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합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불평등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를 포함하여 소수자 차별은 사실 불가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국제 강령, 협약, 선언에 동참하는 것 역시 요청된다. 특히, 성 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멸시와 혐오, 차별과 배제, 박해와 폭력에 시달려 왔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멸시와 혐오, 차별과 배제, 박해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성 소수자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별금지법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한 만큼 더 격렬하고 치열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개인의 가치관과 사상,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 역시 근원적인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홍성수는 ‘차별금지의 예외’에서 일반과 종교 문제를 다룬다. 일반적 차원에서는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에서 개별 영역에서 ‘허용되는 차별 대우’ 항목(제8-10조)을 두고 있듯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차별’은 예외로 해야 하므로 이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에서도 종교와 세계관에 의한 차별 대우를 허용하고 있듯이(제9조, 제20조 제1항), 한국의 차별금지법에서도 종교와 관련한 적용 배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홍성수는 종교단체 및 소속기관이 많은 한국 상황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소속기관(학교, 병원,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을 배제한다면 예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종교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 종교가 존립하기 어려운 때에만 적용 배제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산하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종교 단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마저 제한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배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 배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신교 보수 교단은 한국여성신학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신학계에서 제기하듯이 성경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근본주의 관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면, 과연 성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 까?'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 곧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영실 2007, 62-84).

교육과 고용 등의 영역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동성결혼과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제3의 성 인정 등의 문제는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 단체에서 반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가치 질서, 윤리 도덕, 사회 체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 사유와 적용 배제 사유를 선정하는 등 신중하고 지혜롭게 법 제정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나오는 말

인류 역사 안에서 소수자는 대개 약자의 입장에 놓여야 했고, 다수의 강력한 힘과 권력 앞에서 박해와 억압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야 했다. 성 소수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1977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세계 최초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 간 시민결합을 합법화하였으며,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서남아시아(중동)와 아프리카, 특히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나라들에서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사형, 무기징역 등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95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가 창립되었고, 2000년대 이후 법적 차원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2001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5조 1항) 등 적지 않은 지역의 학교 인권조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군대에서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2009년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군대 내 성 소수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252-258조). 2002년 이후 영화진흥법이나 공연법 심의 기준에서도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였다.

성 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핫 이슈로 떠오른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론이나 학설, 신념이나 신앙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차별받는 한 인간, 그 실존이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성 소수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차별과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입법해 나가길 기원한다.



- 강병철·하경희. 2006.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교육부. 2020. 초등학교 도덕3. 지학사.
- _____. 2020. 초등학교 도덕4. 지학사.
- _____. 2020. 초등학교 도덕5. 지학사.
- _____. 2020. 초등학교 도덕6. 지학사.
- 교황 프란치스코. 2016.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김명수. 2014. 소수자 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15(3), 165-203.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한. 2010. 해악의 원리를 이용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평가. 철학논총 60(2), 135-157.
- 김순남. 2013. 이성애 결혼/가족 규범을 해체/(재)구성하는 동성애 친밀성. 한국여성학 29(1), 85-125.
- 김일수. 2019.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세창출판사.
- 김종우.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 담론: 쟁점으로서의 성적지향과 그 이면. 현대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17-632.
- 루이-조르주 탕. 이규현 역. 2010. 사랑의 역사 이성애와 동성애 그 대결의 기록. 문학과지성사.
- 류성진. 2013. 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공법학연구 14(4), 87-114.
- 박준양.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교도권 문헌들의 분석과 전망. 인격주의 생명윤리 10(2), 3-42.
- 보건교사회. 2018. 초등학교 보건 5. 도서출판들샘.
- _____. 2018. 초등학교 보건 6. 도서출판들샘.
- 성미혜. 200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1), 73-80.
- 수잔 스트라이커. 제이.루인 역. 2016. 트랜스젠더의 역사. 이매진.

- 약셀 호네트 외. 2019. 호모포비아 그들은 왜 동성애를 두려워하는가?. 베스텐트 한국판 6호.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엮음. 사월의책.
- 안진. 2017.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검토-. 法學論義 37(3), 199-237.
- 애너매리 야고스. 박이은실 역. 2012. 퀴어이론 입문. 도서출판 여이연.
- 유인숙 외. 2020. 중학교 보건(15개정). 도서출판들샘.
- _____. 2020. 고등학교 보건(15개정). 도서출판들샘.
- 유혜숙. 2012. 윤리적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선 인간의 윤리 원칙에 대한 성찰. 인간연구 23, 7-53.
- _____. 2019. 사랑의 기쁨에 근거한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인격주의 생명윤리 9(2), 147-176.
- 이서(홍문보미). 2017.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함께 가는 여성 224, 30-31.
- 이영선 외.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재희. 2013. 사적 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 일반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 法曹 684, 103-154.
- 이준일. 2009. 섹슈얼리티와 법. 세창출판사.
- _____. 2014. 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과 입법적 고려사항. 의정연구 20(1), 249-256.
- 이지현. 201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107-139.
- 이춘식 외. 2020. 초등학교 실과5. 천재교과서.
- _____. 2020. 초등학교 실과6. 천재교과서.
- _____. 2020. 중학교 기술·가정①. 천재교과서.
- _____. 2020. 중학교 기술·가정②. 천재교과서.
- _____. 2020. 고등학교 기술·가정. 천재교과서.
- 이현주.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 새가정 9, 90-91.
-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2017. 차별금지법도 제정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민주법학 63, 261-264.
- 최영실. 2007. 성서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원안에서 삭제/변경된 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신학 66, 62-84.

- 추병완 외. 2020. 중학교 도덕 ①(15개정). 지학사.
- _____. 2020. 중학교 도덕 ②(15개정). 지학사.
- _____. 202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15개정). 지학사.
- 플로랑스 타마뉴. 이상빈 역. 2007.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 한가람. 2014. 군대와 동성애 :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진보평론 60, 245-269.
- 한지영. 2011.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3(1), 89-122.
- 허호익. 2010.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38, 237-260.
- 홍관표. 2013.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309-344.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1-38.
- _____. 2019.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9, 1-28.

- 교회연합신문 <http://www.ecumenicalpress.co.kr>
- 기독교한국신문 <http://www.cknews.co.kr>
- 뉴스1 <https://www.news1.kr>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크리스찬연합신문 <http://cupnews.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https://cbck.or.kr>

● 투고일: 2021.01.12. ● 심사일: 2021.01.14. ● 게재확정일: 2021.01.26.

| Abstract |

A Study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 Korea - Focusing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Yu Haesook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Anti-Discrimination Bill has been debated since the 2000s until now. In 2020, the Anti-Discrimination Bill stirred a lot of controversy, particularly regarding the debate ove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Korea'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ocusing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First, the debate related to the Anti-Discrimination Bill is reviewed in five aspects. Subsequently, the debate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ill be considered from the standpoint of three main groups, namely; women's and progressive groups, Catholics, and Protestant conservative denomination and conservative groups. Finally, reflections and tasks are classified in four categories: correct understanding and shifting of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educa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and wise legislation.

〈Key words〉 Anti-discrimination 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Sexual Minorities